

2012. 12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T

Monitoring Export Issues of Main Countries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러시아



CHAPTER

01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3
I. 관리·법률체계	3
II. 통관수속	5
III. 화물의 운송	8
IV. 통관관련 비용	9
V. 비관세조치	11
VI. 변동사항 및 이슈	12
제2절 통관제도 특징	15
I. 복잡하고 어려운 통관제도	15
II. 높은 통관비용	15
통관부서 연락처	16

CHAPTER

02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21
I. 수입 검사기관	21
II. 식품검사 절차	22
III. 식품위생 검사기관	26
제2절 검역사례	27
제3절 한국산 농산물 검역규정	29
I. 신선농산물 검역	29
II. 과실류 수출요건	30
III. 축산물 수출요건	31

라벨링제도

제4절 對러시아 수출업체 관리	32
I. 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164호, 2011.10.4)	32
II. 관련 문의처 : aT 수출지원팀(T.02-6300-1357)	34
검역관련부서 연락처	35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39
I. 라벨링 및 제품표기사항	39
제2절 품목별 라벨링 표기방법	43
I. 주류	43
II. 육류 및 가금류	44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44

통관제도

제1 절 통관제도 일반

I. 관리·법률체계

1. 관리체계

- 러시아 수입관리체계는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로 구분됨
 - 관세조치 : 수입관세를 통하여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보호 및 국가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임
 - 비관세조치 :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
- 세관총서 : 러시아 연방세관(Federal Customs Service;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ТС России)
 - 러시아 세관기구는 재무부의 관세국으로 1865년에 설립되었으며 1917년부터 무역 및 산업 인민위원회(МКТР)의 한 부분으로 소비에트 세관서비스가 운영되었음
 - 1991년에 소비에트 세관서비스는 경제개발부의 국가세관위원회(GTK)로 대체

되었으며 2006년 GTK는 연방세관으로 변경됨

- 러시아 연방세관은 러시아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으며 러시아 통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직속세관**

- 러시아의 수입세관은 권역별로 크게 13개의 지방세관 아래 150개 관할세관이 있고, 700여 개의 분소가 있으며, 항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극동 세관아래 18개의 관할세관이 있으며, 51개의 세관 분소가 있음

-
- 중앙 세관(CTU) ots-geg@mtu.customs.ru
 - 시베리아 세관(STU) stu-kl@stu.zsttk.ru
 - 북서 세관(SZTU) kontakt_sztu@mail.customs.ru
 - 칼리닌그라드 세관 ovs@customs.kaliningrad.org
 - 남부 세관(JTU) jtu_kontakt@mail.customs.ru
 - Privolzhsky 세관(PTU) ptu_odo@ptu.customs.ru
 - 우랄 연방 세관(UTU) UTU-KS-MTS@ural.customs.ru
 - 극동 세관(DVTU) dvtu@dvtu.vladivostok.ru
 - 북 코카서스 세관(SKTU) ssbsktu@mail.ru
-

2. 법률체계

□ **법률명** : Federal Law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 3국 관세동맹 발족에 따라 러시아의 통관/관세법 ‘Federal Law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이 제정되어 2010.12.29일부터 시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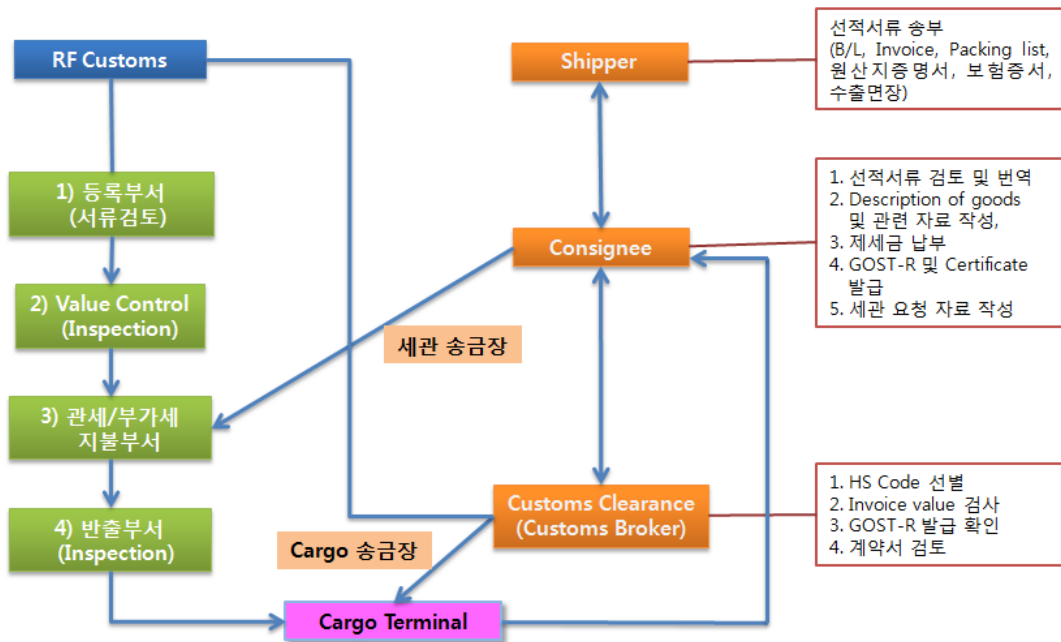
□ **규정사항**

- 러시아로 물건을 수입 또는 러시아에서 물품을 수출, 러시아 연방 국경을 통과하여 물건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일반원칙
- 상품을 신고 및 기타 통관 절차를 적용하기위한 절차
-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고 세관연합(TN VED CU)의 대외 무역에 대한 상품 분류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기위한 규칙

- 관세 적용을 위한 기준
- 세관검사에 대한 절차(위험 관리 시스템, 세관 검사 및 검색, 세관 감사 등)
-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는 제품의 출시에 대한 중단 절차
- 관세 적용에 대한 지불, 회복, 강제 추가부담금 절차
- 세관 당국에 대한 결정, 조치 또는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 등

II. 통관수속

1. 통관수속 개요



2. 수입허가

- 모든 수입허가는 경제개발통상부가 발급하고, 세관이 통제 및 관리하고 있음
- 단, 이에 대한 예외로 운동용 무기류 수입허가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가 관장하며, 암호해독 데이터 수입은 일반허가 외에 연방통신국 (Federal Agency of Government Communications)의 승인이 필요함

※ 수입허가 품목 : 무기류, 무기제조용 원료, 군사목적의 기술, 폭발물, 핵방사능 관련 물질, 귀금속류, 마약류, 독극물, 암호해독 프로그램, 원당 및 설탕, 컬러TV 등

- 수입허가를 규율하는 법규는 ‘러시아연방의 재화(용역) 허가에 관한 절차 규정 제 1299호(1996. 11. 3)’임
- 수입허가는 1회용 허가 와 일반허가 등 2가지 종류가 있음
 - 일반허가는 1년 기간 이내에 단일계약에 의한 수개의 위탁수입에 대한 허가임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 리스트는 ‘러시아연방 내 수출입 쿼터 부과 및 허가에 관한 정부법령 제854호(1992. 11. 6)’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는 별도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보석류 수입허가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의 보석류 수출입절차에 대한 대통령령 제973호’(2001. 6. 21)가 규정하고 있음

3. 세관수입자 등록서류 및 통관 접수서류

세관수입자 등록서류 목록

No.	등록서류
A-1	정관, 변경/개정본포함(공증본)
A-2	입헌동의서(공증)
A-3	사업자등록증명서(세무서 발행 납세자등록증, 공증본)
A-4	RosStat 발행증명서(국가통계위원회증명서)
A-5	지불계좌 개설한은행의 Reference(러시아 classifier of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에 등록된 은행코드, 발행 후 1달 이내의 문서)
A-6	외환계좌를 개설한은행의 Reference(1달 이내 발행된 문서)
A-7	세무국등록증명서(세금납부번호, 산업기업체분류, 공증본)
A-8	러시아연방 법인등기부등재증명서(공증본)
A-9	회사 대차대조표(최근분기, 세무국의허가승인본)

No.	등록서류
A-10	최고경영자 임명에 관한 이행결의문
A-11	회계담당자 임명에 관한 이행결의문
A-12	최고경영자 여권사본(공증본)
A-13	회계담당자 여권사본(공증본)
A-14	회사의 법적 등록 주소에 대한 차용계약서
A-15	통관브로커 위임장
A-16	법인장이 외국인인 경우 노동허가증

※ 세관 수입자 등록은 해당세관에 처음 통관 접수시 필요하며 통관서류와 동시 접수

□ 통관 접수서류 목록

구분	No.	통관접수서류	언어
필수 접수 서류 항목	B-1	계약서, 부속협약서	러시아어/영어
	B-2	운송장(B/L, CMR, AWB)	러시아어/영어
	B-3	Invoice	
	B-4	Packing list(Detailed Packing list)	러시아어/영어
	B-5	제품설명서(사용목적, 기능, 동작원리, 사용절차, 구성품, 규격, 사진, 도면, 시험성적서 등)	러시아어
	B-6	원산지 증명서	러시아어/영어
	B-7	보험증서(Certificate of Insurance)	러시아어/영어
	B-8	수출신고서(수출신고서의 경우 선적사의 자국어 사용)	러시아어/ 선적사 자국어
	B-9	Certificate(HS코드에 따른 관련 Certificate발행) ⇒ GOST-R, Declaration, Refusal Letter, Fire certificate 등	러시아어
	B-10	외환거래확인서(PassportSGELKI)	러시아어
	B-11	관세, 부가세, 수입인지세 예치금 송금장 은행확인서	러시아어
기타 접수 서류	C-1	제작사 상표(Trade Mark) 사용허가확인서	러시아어/영어
	C-2	매뉴얼 및 CD/DVD 저작권(License)이전확인서	러시아어/영어
	C-3	정품수입 확인서(일부제한품목)-현지해당법인에서 수령	러시아어
	C-4	MSDS(화학제품) 및 시험성적서(글루, 가향제)	러시아어
	C-5	식물검역증	러시아어/영어
	C-6	Technical Passport (전력변환기 통관시)	러시아어/영어

Ⅲ. 화물의 운송

1. 극동 러시아 및 중부 러시아 화물 운송

- 우리나라에서 보스토치니항과 블라디보스톡항까지 해상운송되어 내륙으로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을 통해 운송됨
- 화물의 통관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수화주 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항 도착 → 철도에 환적하기 전에 수화주 혹은 수화주 대리인이 직접 수입통관 → 러시아 내국화물 자격으로 운송
 - 보세운송 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항 도착 → 보세운송 허가를 받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 → 목적지의 세관에서 통관절차 진행
 - 복합운송 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항 도착 → 국내 운송업자들이 현지 협력자들과 제휴해서 제공하는 복합운송 서비스를 통해 내륙운송
- 통관 시점에 따라 철도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여부가 달라짐
 - 수입통관을 거친 화물은 부가가치세 18%가 면제되나 보세운송되어 목적지에서 통관이 예정되어있는 화물은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철도운송료가 결정됨

2. 서부 러시아 화물 운송

- 모스크바를 목적지로 하는 화물이 주로 이용하는 운송경로이며 핀란드 하미나항을 경유함
- 서부 러시아 화물 운송은 2가지 경로가 있음
 - 함부르크항 경유 : 독일 함부르크항 도착 → 선박으로 이동하여 핀란드 하미나항 도착 → 트럭으로 모스크바 이동
 - 보스토치니항 경유 : 보스토치니항 도착 → 기차로 이동하여 핀란드 하미나항 도착 → 트럭으로 모스크바 이동

3. 항공화물운송

-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 세르메체보 2 공항으로 직송
 - 항공이동 소요기간은 1일, 통관은 3~7일
- 주로 중량이나 부피가 적은 화물에 적합하며 정상통관을 하는 화물임

IV. 통관관련 비용

1. 통관비용 개요

- 러시아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적용되며, 통관수속에 들어가 있는 기타 경비로는 통관비, 세관원 동행료, 창고 보관료 등이 있음
 - 통관비용은 2012년 기준 1 컨테이너 평균 1,800달러 내외임

2. 수입관세

- 통관시 수입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관세 부과기준은 HS 상품분류에 의거한 러시아연방 대외경제상품 코드임
 - 러시아는 HS(Harmonis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방식을 상품분류코드로 채택하고 있어 그에 따라 모든 상품은 97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포함됨
- 또한 러시아는 수입대상국을 5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기준에 따른 106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를 부여하고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는 최혜국세율을 부과함

- 단 CIS 회원국은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사탕, 알콜류, 담배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CIS 회원국 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예외조치가 적용됨

구분	적용 관세율	비고
CIS 국가	면세	
회해국 지위 국가	기본관세율	EU 회원국 포함
개발도상국	기본관세율의 75%	한국 포함
저개발국	면세	정부량 413, 414호
최혜국 비대상 국가	기본관세율의 200%	

- 수입관세율은 원료, 반가공품, 완제품 순으로 높아지나 최고관세율과 최저관세율 간의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임

- 2001년 최고관세율을 기존 30%에서 20%~25%까지 인하하고 품목분류를 단순화함
- 최근 러시아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지 공장용도의 설비, 부품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
- 2012년 7월 WTO 가입 비준 완료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수입가격의 조작을 통한 관세포탈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종량세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관세로 징수함

3. 소비세(EXCISE TAX)

- 적용세율 : 20%~570%
- 소비세는 사치품을 중심으로 소비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부과함
- 적용품목 : 에틸알코올 주정, 주정 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동차용 벤진, 승용차 등

4.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적용세율 : 세관신고가격의 18%, 식품류 등 일부 품목은 10%
 - 일부 기술연구용 장비, 외국원조에 관련된 수입품목, 외국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용으로 수입된 품목 등에는 부가세 면제
 - 2002년 1월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던 의약품은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향후 부가가치세를 15%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나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재무부와 경제통상개발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 세관수속비

통관비, 세관원 통행료, 창고 보관료 등이 있음

V. 비관세조치

1. 표준 및 인증

- 통관 시 수입품에는 지방 국세청이 발급한 안전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모든 수입식품류의 라벨이나 포장지에는 러시아어로 제품명, 생산자, 중량, 성분, 유효일자, 기타 정보 등이 표기되어야 함
 - 비식품류에는 라벨이나 설명서 등에 제품명, 제조자, 원산지 등이 표시되어야 함
-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정 및 품질 인증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증이 요구되는 모든 제품은 국세청의 인가를 받은 검사소의 검사를 통과해야 함
 - 표준 및 인정제도를 규율하는 연방기술규제법(제184-FZ호, 2002.12.27)은 인증이 필요한 제품 범위를 줄였으며, 처음으로 자율검사제(Declaration of Conformity)를 도입하였음

2. 정부구매의 국산품 우대

공식적으로 정부구매 시 국산품에 부여하는 특혜는 거의 없으나, 정부구매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관계로 비공식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소지는 많이 있음

3. 사전예치조건

러시아 통관법은 수입물품 및 운송수단의 예치, 제3자 보증, 해당금액의 예치 등을 통해 관세납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외환통제

- 수입거래는 러시아 외환법규의 규제를 받으며, 주된 법률은 외환법 제3615-1호 (1992.10.9 제정, 2004.6.17 개정)와 '거주자에 의한 수입품 지급조정 통제에 관한 중앙은행 및 국세청 합동명령제91-1/01-11/28644호(2000.10.4)임
- 수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거래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동 서류는 상세한 수입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통관 시 수입자는 동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5. 국내대행자

통관법 172조에 따라 러시아 조직만이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입계약의 러시아측 당사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세관 보세창고에 맡기던지 러시아 국적의 통관대행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대행료가 상당히 비싼 편임

VI. 변동사항 및 이슈

1. 최근 관세정책 동향

- 2009년 10월 러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매주단위로 수

입품과의 경쟁에 취약한 국내산업 및 농업품목의 시장판매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총 350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상하였음

- 수입관세 인상 품목은 우유, 버터, 치즈 등의 농산품, 자동차, 농업기계, 철금속(ferrous metal), 항공기 등이며 대부분 9개월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기한이 도래한 자동차, 철금속 제품에 대해서 다시 9개월간 연장조치함
 - 또한, 자국수출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인하하였는바 LCD TV생산을 위한 플라즈마 및 LCD스크린 등 부품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하였음
 - 또한 사하공화국 등 일부지역에서 추출된 석유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면제하는 등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기업들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조치를 실시하였음
- **경제위기대책으로 실시된 수입관세 인상을 통한 국내시장 보호가 성공적이었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수입품이 국내산업을 대체할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입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단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국내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국내제조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동기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당품목의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필요시 적기에 보호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자원수출세 면제는 내년부터 폐지되어야 하며, 내년부터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 실시에 따라 효과적인 관세정책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이 중요하다고 평가함.
- 그러나, 최근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하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취한 보호무역주의의 악영향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취하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가 단기적인 것으로서 종결될 것이라고 언급함

2. 보호무역 조치강화

- 러시아는 G20 정상회담에서의 보호무역 Standstill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수입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음
- EU 집행위의 G20 국가 무역제한조치 모니터링 제5차 보고서('11.6)에 의하면 러시아는 경제위기 이후 1년('08.10~'09.10월)간 G20 국가 중 가장 많은 보호 무역 조치(48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 관세인상 등 국경 무역장벽 35건, 기술·조달 장벽 4건, 투자장벽 1건, 수출촉진 1건 등 총 48건의 무역제한조치 도입
 - ※ 러 무역제한조치 상세내용은 http://ec.europa.eu/trade/index_en.htm 참조

3. 2012년 8월 22일, WTO 156번째 회원국 지위 발효

- '93년 GATT시절 가입을 신청한 이후 '98년부터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자국 내 에너지 가격 협상 문제와 美, EU와의 이견, '08년 그루지야와의 정치적 분쟁 등으로 회원 가입에 난항을 겪어왔음
- '11년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약20년 만에 러시아의 WTO가입이 최종 승인됨
- G20회원국 중 유일하게 미가입국이던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국제정치적 위상 제고 및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
- WTO 이후 러시아 수입통관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혁을 추진하여 교역투자에 있어 새로운 환경 조성 가능

4. 화물운송 지연발생 사유

- 한국에서 러시아로 운송되는 화물은 대부분 극동지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데 겨울철에는 혹한으로 인해 터미널에서 수하작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안전상

의 이유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기도 함

- 이로 인해 평소에 비해 2~3배 운송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운송시기를 잘 선정해야함

제 2 절 통관제도 특징

I. 복잡하고 어려운 통관제도

- 러시아의 통관제도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외화유출을 억제하며 정부 재정확보를 위해 수입관세제도, 규격인증제도를 도입해 다수의 정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외국상품의 통관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사회주의적 관습, 전산시스템의 미구축, 일률적이지 못한 통관관행, 관세법의 자율적 해석, 세계공용 통관관습 불인정, 높은 보세창고료 등으로 특수한 통관여건을 지니고 있음
-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보낼 경우 UPS, DHL, TNT 등을 이용하더라도 세관사무소에서 내용물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음

II. 높은 통관비용

- 러시아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3%이며 부가가치세는 18%이나 그 외 특수품목세, 각종 수수료, 인증서 및 증명서 취득비용, 법인세 등 수출가격 외에 현지 판매가격에 미치는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함
- 또한, 통관 진행 중에 서류나 물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통관기간의 고의적 지연, 관료의 횡포 등으로 뇌물을 주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함

-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 분석을 위한 샘플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는다 고 법제화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불법적인 통관 발생

- 이러한 복잡한 통관구조와 높은 통관비용으로 회색통관, 간이통관, 블랙통관 등으로 일컫는 이중통관방식이 통상적으로 이뤄짐

통관부서 연락처

1. Federal Customs Service(www.russian-customs.org)

- Head Office
 - Location : Department of Cooperation with the Business Community
 - Tel : +7 (495) 204-57-28,
 - Fax: +7 (495) 204-57-12,
 - E-mail: umts_panfilova@mail.customs.ru
- Central Customs Directorate (CTU)
 - E-mail: ots-geg@mtu.customs.ru
- Siberian Customs Directorate (STU)
 - E-mail: stu-kl@stu.zsttk.ru
- North West Customs Directorate (SZTU)
 - E-mail: kontakt_sztu@mail.customs.ru
- Kaliningrad Customs Administration
 - E-mail: ovs@customs.kaliningrad.org
- Southern Customs Directorate (JTU)

- E-mail: jtu_kontakt@mail.customs.ru
- Privolzhskoe Customs Directorate (PTU)
 - E-mail: ptu_contact@ptu.volga.castoms.ru
- Urals Customs Directorate (UTU)
 - E-mail: UTU-KS-MTS@ural.customs.ru
- Far Eastern Customs Directorate (DVTU)
 - E-mail: contactline_dvtu@dvtu.vladivostok.ru

2. 주요 항만 관리공사

- The Commercial Port of Vladivostok
 - Address : 9, Strelnikova Str. Vladivostok 690950, Russia
 - Tel : 4232 222-364
 - Fax : 4232 222-264
 - E-mail : mcport@vladcomport.ru
 - Web Site : www.vmtp.ru
- Vostochny Port
 - Address : Vnutriportovaya, 47, Nakhodka, Vranghel, Primorsky Region 692941
 - Tel : 7 (4236) 665 271
 - Fax : 7 (4236) 665 153
 - E-mail : vp@vpnet.ru
 - Web Site : www.vpnet.ru
- Port of St. Petersburg
 - Address : 10 Gapsalskaya Str. St. Petersburg 198035, Russia
 - Tel : 7 812 718 8951
 - Fax : 7 812 327 4020

- E-mail : public@mail.pasp.ru
- Web Site : www.pasp.ru



▮ The Commercial Port of Vladivostok ▮

검역제도

제1 절 검역제도 일반

I. 수입 검사기관

- 러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of the Russian Federation)
 - 러시아 연방정부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 기관에서 검역 및 수입 검사를 실행
 - 식품위생관리 및 보건의료 업무를 총괄

-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State Standards Committee)
 - 러시아 연방 국가위원회 소속으로 수입 및 국내 제조 제품의 제품인증서 표준 관리

- 러시아 농업부(The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 러시아 연방정부 중앙부처 소속으로 육류, 가금류, 곡류의 검역업무, 수입 및 국내 농산물 및 축산물 관리

러시아 농업부 관련 조직

- 농업부 수의국(The Veterinay Department of the R.F. Ministry of Agriculture)
- 러시아 곡물제품 검사원(The R.F. State Bread Product Inspection)
- 식물검역원(The R.F. State Plant Quarantine Inspection)

II. 식품검사 절차

1. 수입식품신고

- 러시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
- 운송 계약, 착률 증서, Invoice, Packing List를 첨부하여 제출
 - 이 서류들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
 - 출하원산지, 용량, 도착일, 가격을 표시한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서
 - 각각의 물건이 저장될 장소
 - 가공공장이나 도매업자가 물건을 수령할 장소
 - 포장목록, 선적 방법을 표시한 화물 계획 (팔레트 등)
 - 세관에 화물 가격을 표시하는 신고서



2. 검역 및 관련 인증서 발급

- 수의 인증서 : Russian Veterinay Service에서 육류 및 가금류 식품의 수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의 인증서가 요구

- 식품위생증명서(Hygienic Certificate) : 이 증명서는 수입되는 식품이 인체에 유해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GOST를 받기 전에 발급 받아야 하며, 이는 러시아 보사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러시아 보사부가 발급하는데 동 과정까지를 한국SGS(주)에서 대행해 주고 있음
- 규격인증서(Safety Certificate) : 러시아의 연방표준위원회에서 발행 하는 안전 규격인증서로,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은 강제인증품목에 해당 함, 러시아연방 표준위원회는 해외에서 SGS, MERTCONTROL 등에 인증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SGS(주)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대러 수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하루 만에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신규진출품목의 경우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됨
- 원산지 인증서 : 이 인증서는 관세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며 인증서는 위생 인증서를 발급하는 국가 위생 역학 검사부처의 지역 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3. 식품검사 신청서 제출

- 수입업자는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 식품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서류 검사 및 식품 위생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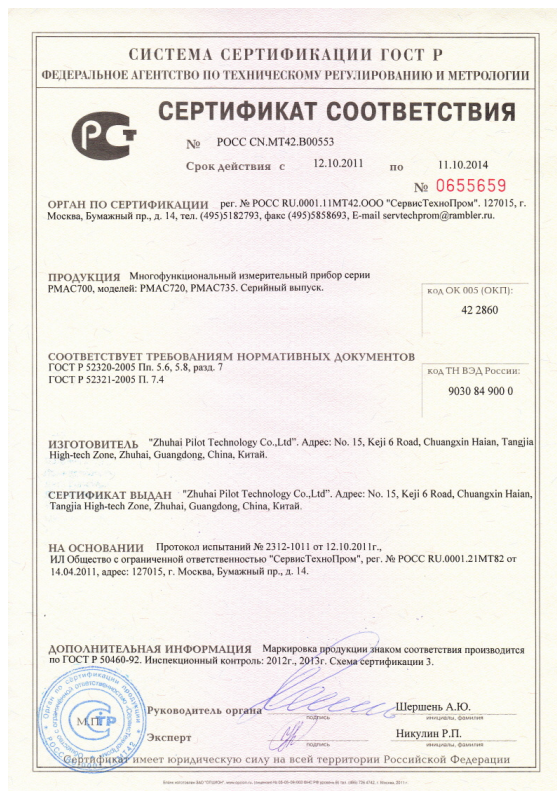
-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아래의 인증서를 확인하고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센터에 식품 위생 검사를 요청
- 안정 인증서 : 이 인증서는 러시아의 국가표준위원회(GOSSTANDART)에서 발급하며 시험 완료를 위해서는 5kg의 샘플이 필요하며 5~7일 정도 소요되고 안전 인증서는 표준화 센터에 의해 수행된 시료검사 및 위생 인정서에 기초가 됨
- 러시아표준규격 인증서(GOST-R) : GOSSTANDART에 의해 정해진 표준에 대한 부합 인증서는 모든 수입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제품에 가장 중요한 인정서임

5. 검사증명서 발급

- 러시아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러시아 관한 세관에 통보

6. 통관 조치

- 러시아 세관은 적합 판정된 검사증명서가 발급되면 출하가격에 따라 관세를 입금하였음을 증명하는 은행 서류 등을 확인하고 수입식품을 통관시킴
- 만약 수입식품이 부적합 판정된 경우는 반송, 폐기, 재처리 등의 조치를 취함



■ 러시아표준규격 인증서(GOST-R) 예시 ■

GOST-R(러시아표준규격)

■ 정의 : Gosstandart of Russia (러시아표준규격)

- Gosstandart : 러시아어로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국가, 주(state),)와 стандарт(표준)이란 뜻의 영어 식 표현인 Gosudarstvenny의 앞 세글자(Gos-)와 표준, 규격을 뜻하는 Standart를 합쳐서 (Gos udarstvenny +Standart) 국가규격이란 의미
- 이 기관에서 관리하는 각 규격인증을 GOST 또는 GOST-R로 표기하고 있음

■ 주관기관

- GOSSTANDART(러시아연방국가표준위원회:GOST) : www.gost.ru
- 한국SGS : www.sgsgroup.kr

■ 대상품목

- 러시아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위생검사증명서(Hygienic Certificate)가 필요한 제품
예) foods, toy, construction and finishing materials, household electric items, objects and articles for medical use, textiles
-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예) 1개만 인도되는 상품, 개인적 사용을 위한 상품, 외교관계 사무소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상품
- 통관시 GOST-R 인증이 필수적인 품목
예)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가정용기기/공구, 바이크, 완구 및 아동복, 자전거, 보육기기, 농산물, 식품, 음료, 담배, 가구, 식기구, 도기류, 화학약품(살충제, 농약), 화학제품, 비료, 세제, 사진 및 영상기기, 고무제품, 목재류, 의류, 신발류, 안전모, 세라믹/금속/동/알루미늄제품, 철금속/비귀금속제품, 원자로, 보일러기기, 전기기기, 선박, 측정, 제어, 정밀, 지상운송수단(철도 차량 및 트레일러 제외), 시계, 악기류, 무기류, 스포츠용품

■ 인증마크



■ 적용국가

- 러시아(GOST-R), 카자흐스탄(GOST-K), 우즈베키스탄(GOST-U), 벨라루시(GOST-B), 몰도비아(GOST-M)

■ 기타

-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없으며, GOST 인증서가 없는 경우 러시아 세관에서 통관을 못하며, 시장에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수거 확인 등의 사후 관리제도를 거침

Ⅲ. 식품위생 검사기관

1. 검사대상

- 식품위생 검사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아래와 같은 제품을 포함
 - 미네랄워터(일반, 치료용 모두)
 - 어린이용 식품(모유 대용품, 시리얼, 우유,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으로 제조된 제품, 유아용 식품, 유아용 허브차, 임산부 및 모유를 먹이는 여성용 식품 등 포함)
 - 식이요법 제품
 - 유제품
 - 육류 및 육류 가공품(영양이 첨가된 제품 포함)
 - 식품 첨가물
 -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물
 - 유전자 변형 제품으로 제조된 식품
 - 신기술로 제조된 식품(식품 원자재 포함)

2. 수의검역

- 수의검역은 러시아 국립수의검역서비스(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에서 담당하며, 아래와 같이 구성
 - 러시아 농업식품부 수의국
 - 수의국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 각 주 및 지방자치공화국의 수의부처
 - 시 및 기타 행정조직 수의부처

- 각 지방의 동물질병연구소, 기타 수의연구소
- 지방 수의병원
- 국립 수의검사소 등 기타

수의검역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음

- 모든 종류의 동물
- 동물 관련 식품(신선육, 포장육, 지방, 육류 추출물, 소시지, 베이컨, 우유, 치즈, 건조우유, 마가린, 계란, 생선류, 해산물, 꿀 및 관련식품 등)
- 동물이 원료인 기타 제품
- 동물사료
- 동물 의약품 등

3. 식물검역

- 식물검역은 러시아 연방식물검역소에서 담당하며 관련 러시아 법률에 따르면 검사담당 직원은 국경에서 제품을 검사해야 함

제 2 절 검역사례

- 유해잡초(암브로지아; 돼지풀) 검역관련

(출처 : 브란스크 주 2011.3.23.)

- 유해잡초 암브로지아(돼지풀)씨가 혼입된 옥수수 약 400톤이 우크라이나에서 브란스크주에 수입
- 수입된 전체 물량에 대해 잡초 씨의 생명력이 없어지도록 적절한 기술처리 조치함

- 러시아의 돼지풀에 대한 검역은 매우 까다로우며, 지역 및 주간 이동에서도 유헤잡초 혼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검역증명 발급 등에서 중요한 문제가 됨

□ 러시아 수입 감자 중 검역대상 유해 병충해 감염 확인

(출처 : 러시아 농업감독국 연해주지부 홍보실 2011.5.13.)

- 러시아 농업감독국 전러시아식품검역센터에서 풋마름병, 감자나방 등 검역대상 병충해에 감염된 식용감자 수입을 발견함
- 그러나 세균, 바이러스, 선충 및 잠복성 감염에 대한 유해물질 검역이 모두 진행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그대로 통관됨
- 감자를 종자로 사용시 반드시 확인하여 수입된 감자를 사용하지 말 것을 농가에 당부함



제3절 한국산 농산물 검역규정

I. 신선농산물 검역

1. 수출가능품목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옥수수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감자,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호접란),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화훼류 기타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버섯 및 화훼류 기타품목은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는 수출불가

2. 수출불가품목

- 곡류 : 콩, 팥, 녹두
- 화훼류 기타 :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포함)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Ⅱ. 과실류 수출요건

1. 사과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사과 과신파리가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2. 배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Numonia pyrivorella*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3. 복숭아, 자두, 살구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관련 문의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러시아 검역요건 담당부서 : T. 031-420-7671
- 수출식품 검사신청, 검사절차, 수출식품검역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민원상담은 아래 지역본부에서 담당

지역별 지역본부	연락처
인천공항지역본부	032-740-2077
중부지역본부	032-434-3200
영남지역본부	051-464-8895
호남지역본부	063-467-3456
제주지역본부	064-728-5410

Ⅲ. 축산물 수출요건

1. 한국의 동물감염에 대한 제한조치 현황

- 2000년 - 구제역
- 2002년 - 구제역
- 2004년 - 조류 독감

2. 수입제한 세부내역

제한사유	제한품목	Instruction No.	일자
조류독감 (avian influenza)	살아있는 새, 계란, 가금류 고기 및 가공제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 가금류 관련 중고 장비	13-8-01/ 799	'04.1.23.
구제역 (FMD)	2010년 11월 2일 이후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육류제품(완제품, 원료, 부산물 포함),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 관련 중고장비류, 사료 및 사료첨가제	FS-GK-2/ 1204	'10.2.11.

3. 수입축산물 수의검역관련 인증

번호	인증 내역	승인일자	관리번호
1	Veterinary certificate for pork exported to the Russian Federation	'99.1.25.	
2	Veterinary certificate for fish and seafood (fishery products) and products of their processing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ussian Federation	'07	
3	Veterinary certificate for fattening pig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Russian Federation	'08.8.26.	FS-NV-2/8731 dd.29.08.2008
4	Veterinary certificate for breeding pig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Russian Federation	'08.8.26.	FS-NV-2/8731 dd.29.08.2008
5	Veterinary certificate for slaughter pig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Russian Federation	'08.8.26.	FS-NV-2/8731 dd.29.08.2008

제 4 절 對러시아 수출업체 관리

I. 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164호, 2011.10.4)

1. 목적

- “對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164호, 2011.10.4)” 제7조에 따라 러시아 식용농산물 수출업체의 등록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함

2. 등록대상

- 식용농산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업체 또는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등록현황 : 19개 품목, 48개 업체, 319농가 등록('12.10월 기준)

3. 등록 및 수출신고

○ 업체등록

- 수출업체는 “대러시아 수출업체 등록 신청”, “대러시아 농산물 수출계획서”, “대러시아 농산물 수출예정 신고서”를 수출업체 소재 aT 관할지사에 제출함
- 단, “대러시아 농산물 수출예정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등록사항 변경

- 수출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을 aT에 신고하여야 함
 - ① 수출업체명, 대표자의 변경
 - ② 농가의 추가, 취소, 재배면적의 증감, 재배품목 변경 등
 - ③ 수출 예정품목의 변경, 취소 등

○ 수출신고

- 수출업체가 식용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품의 재배지 또는 수출단계에 대하여 안전성 모니터링 검사가 가능하도록 업체 등록시 또는 수출 30일전까지 aT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함

4. 수출업체 안전관리

- 수출업체는 러시아 통관 중 안전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aT에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함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농가와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Ⅱ. 관련 문의처 : aT 수출지원팀(T.02-6300-1357)

대러시아 수출업체 등록(신규·변경) 신청서

업체명	한 글			
	영 문			
대표자	영 문		한 글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주 소	한 글			
	영 문			
연락처	전 화		FAX	
	사무실		휴대폰	
	E-mail			
사업개요	설 립 일			
	주요사업			
	비 고			

당사는 러시아 식용농산물 수출을 위해 위와 같이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검역관련부서 연락처

- Federal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Service (VPSS)
 - <http://www.fsvps.ru>
 - Address : 107139, Moscow, Orlikov pereulok, 1/11
 - Fax : (+7 495) 607-51-11
 - E-mail : info@svfk.mcx.ru
- Federal Service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Human Well-Being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 (Rospotrebnadzor)
 - <http://www.rospotrebnadzor.ru>
 - address : building 5 and 7, house 18, Vadkovsky lane, Moscow, 127994
 - Tel : +7 (499) 973-26-90
 - Email : depart@gsen.ru
- The Federal Service for Technical Regulation & Metrology (Rostekhnregulirovaniye)
 - <http://www.gost.ru/wps/portal>
 - Address: 9 Leninsky Prospect, Moscow, B-49, GSP-1, 119991
 - Tel : +7 (499) 236 03 00
 - Fax : +7 (499) 236 62 31
 - E-mail : info@gost.ru
-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http://www.minpromtorg.gov.ru/eng>
 - Tel : +7 (495) 539-21-87
 - Fax : +7 (495) 539-21-72

○ Federal Customs Service of Russia (FTS)

- <http://eng.customs.ru/>

Counsellor, Head of Russian Federal Customs Service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 Boris Sladkov

- Address : Embassy of the Russian Federation; 34-14, Chong-dong,
Chung-gu, Seoul, 100-120, Korea

- Tel : +82 (0)2 318-2116~18

- Fax : +82 (0)2 754-0417

- E-mail : sladkov.boris@gmail.com

Consul, Representative of the Russian Federal Customs Service in Busan
Consulate General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Busan, Korea - Igor Ten

- Address : 89-1, 4-Ka, Chungang-Dong Chung-Ku, Busan,
Republic of Korea

- Tel : (051) 441-9904~5

- Fax : (051) 464-4404

- E-mail : ten.igor@yahoo.com, tigor82@mail.ru

○ National standards codified in the State Standards (GOST)

- www.gost.ru

- Address : 9 Leninsky Prospect, Moscow, B-49, GSP-1, 119991

- Tel : +7 (499) 236 03 00

- Fax : +7 (499) 236 62 31

- E-mail : info@gost.ru

Ⓜ The Sanitary Rules and Norms (SanPiN)

- <http://www.rosпотребнадзор.ru>

- address : building 5 and 7, house 18, Vadkovsky lane, Moscow, 127994

- Tel : +7 (499) 973-26-90

- E-mail : depart@gsen.ru

라벨링제도

제1 절 라벨링제도 일반

I. 라벨링 및 제품표기사항

1. 식품표시제도

- 러시아의 식품 표준규정은 자국 식료품과 수입상품에 적용이 되며, 러시아 지역에서 도·소매로 판매되고 있으며, 사회 급식을 담당하는 기업, 학교, 유치원, 진료소,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음
- 현재 러시아에서는 수출 표준화 위원회(GOSSTANDART of Russia)의 상품표기법(GOST R 51074-97, 1997.8.15)에 의거하여 모든 러시아의 수입제품은 반드시 러시아어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음

2. 상품설명서

-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에 대해 러시아어 설명서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음
- 제품이름, 원산지, 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 사용설명서를 러시

아어로 첨부해야함

- 해당 표기는 포장지, 라벨 또는 별지에 할 수 있으며 제품과 함께 동봉해야함

상품설명서에는 다음 8가지 정보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 기본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특성 및 특징, 강제인증에 관한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주소

3. 제품라벨

러시아는 소비자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라벨링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라벨링의 요구조건은 제품에 따라 다르며, 제품에 맞는 특정한 라벨이 무엇인지, (식품 첨가물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모든 조제약품들의 경우에서처럼) 추가적인 문서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러시아의 라벨링 관련 법규는 기존의 EU의 지침들을 따르고 있으며 기존의 유럽의 관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

기본 기재사항

- Product name
- Product type, grade, or category
- Name, country, address of producer, packer, exporter and importer
- Product weight (net and gross) or volume
- Product nutritional quality
- Ingredients
- Date of processing

- Storage conditions
- Shelf life
- Conformity stamp (RST)

추가 기재사항

- data about the manufacturer (including the organization authorized to accept claims from consumers)
- country of origin
- trademark
- net weight or quantity
- composition
- nutritional value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product
- storage conditions
- use-by date or shelf-life expiration date
- regulatory or technical documents with which the products can be identified
- confirmation of conformity, and other data

GOST P 51074-2003 요구 기재사항

- food additives, biologically active additives, flavorings, components of non-traditional composition (including components from raw materials containing protein that does not exist naturally and was added while manufacturing the product)
- food products that are products of biotechnology, obtained from products

4. 영양성분표시

- GOST P 51074-2003는 국제표준을 준수하며 영양성분표시에 대한 모든 특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제품에 들어있는 기본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량표기 없이 나열 할 수 있음
- 일일권장섭취량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함
 - 100g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또는 칼로리가 일일권장섭취량의 2% 이상일 경우 표시해야함
 - 100g당 미네랄, 비타민이 일일권장섭취량의 5% 이상일 경우 표시해야함

5. GM(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변형) 식품표시

- 러시아는 다음의 15개 GM 식품을 관리하고 있음
 - 콩 3종류, 옥수수 8종류, 사탕수수 1종류, 감자 2종류, 쌀 1종류
(자세한 내용은 2009년 포스트의 GAIN 생명공학 연례보고서 참조)
- GM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해당 내용을 러시아어로 표기해야함
 - GM 미생물이 직접 사용된 제품은 “GM 미생물이 포함된 제품임”을 표시
 - 비활성 GM 미생물이 사용된 제품은 “GM 미생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임”을 표시
- 단, GM 원료의 함량이 0.9% 미만일 경우는 자연혼입으로 간주되어 표기하지 않을 수 있음

제 2 절 품목별 라벨링 표기방법

I. 주류

- 주류제품에 대한 라벨요구사항은 연방법 171과 국가 표준 GOST P 51074-2003 및 GOST P 52194-2003에 표시되며 보드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류가 적용대상이 됨
- 모든 수입 제품의 대부분에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이 필요함
 - 모든 주류제품은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으로 활성화 된 식품첨가물, 비 전통적인 재료, 생명공학기술에서 파생 된 제품의 모든 구성요소,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 등을 표기해야함
 - 맥주 : 맥주의 종류(light, semi-dark, dark), 알코올 % 함량(무알콜 맥주와 아로마와 맛이 첨가된 맥주는 제외), 에틸 알콜의 최소 비율, 병입 날짜, 기본 원료, 영양 구성
 - 와인 : 병입 시설, 병입날짜 또는 숙성날짜, 에틸알콜 비율, 당도(드라이와인 제외)
 - 스파클링 와인 : 당도, 수확년도, 에틸알코올 함량 10% 미만인 와인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 알코올 음료 - 에틸 알코올 함량, 설탕 농도(설탕이 재료로 사용된 경우), 병입 날짜, 구성 (맛과 제품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의 목록 포함), 에틸알코올 함량 10% 미만인 제품의 유통기한
- 2007년 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경고가 과도한 음주의 건강 위험에 대한 라벨에 표시해야함

II. 육류 및 가금류

- 냉동 가금류 고기, 부산물, 소비자편의제품, 소시지 또는 육류 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으로 표시해야함
- 진공팩이나 MGM 가스팩으로 포장된 경우 가금류 고기, 소비자편의제품, 요리재료, 소시지, 고기 제품 등으로 표시해야함
- 캔 제품은 고기, 지방, 부산물, 식물성 원료의 성분함량을 표시해야함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 러시아연방세관 Federal Customs Service
 - www.russian-customs.org
- 블라디보스톡 항만공사 The Commercial Port of Vladivostok
 - www.vmtp.ru
- 보스토치니 항만공사 Vostochny Port
 - www.vpnet.ru

-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공사 Port of St. Petersburg
 - www.pasp.ru
- 러시아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of the Russian Federation
 - <http://minzdrav.gov.ru>
- 러시아 농업부 The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 www.mcx.ru
-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State Standards Committee; GOST
 - www.gost.ru
 - 한국SGS : www.sgsgroup.kr
- Federal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Service (VPSS)
 - http://www.fsvps.ru/fsvps/main.html?_language=en
- USDA FAS GAIN Report
 - general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food and agricultural imports into Russia
 - <http://gain.fas.usda.gov>
- DHL Guide for DHL Express Dutiable Shipments to Moscow, Russia
 - http://www.dhl.com/en/express/shipping/customs_support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www.qia.go.kr
-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ita.net, www.kotra.or.kr
- Kati 농수산물무역정보
 - www.kati.net